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가단5065064 판결 [보증채무금 등]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상귀, 홍화연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양만우, 최운서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9.부터 2023. 9.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의 2022. 11. 1.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2. 11. 2. 접수 제156404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가 2004. 12. 17. 주식회사 E에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인 피고 B은 보증인이 되었다.

나. 피고 B은 2007. 1. 5. 원고에게 위 150,000,000원 중 95,000,000원을 변제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1) 보증채권자 원고와 보증채무자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에 행한 가압류 원인 보증채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2) 피고 B은 2007. 1. 5. 9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동시에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해 원고가 행한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7.자 2006카단7042)을 해제해주며 보증채무도 면제한다.

3) 나머지 보증채무는 본 합의 후 5년 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단, 피고 B으로 인한 도급 일을 원고가 수주했을 시는 원고가 이를 참작 보증채무를 면제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마쳐져 있다.

1) 2000. 1. 24. 피고 B의 별지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00. 1.

2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2) 2000. 11. 29. 피고 B의 별지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3) 2006. 11. 1. 원고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50,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06.

10. 27.자 2006카단7042 가압류결정)

4) 2007. 1. 19. 위 3) 가압류등기 말소등기(2007. 1. 9. 해제)

5) 2022. 11. 2.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2022. 11. 1. 신탁)[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보증채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나머지 보증채무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일 5년 후인 2012. 1. 8.부터 10년간 분할변제하기로 한 기한인 2022. 1. 8.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1.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4. 12. 1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분할변제약정에 관하여 각 분할금액 및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상, 변제기한인 2022. 1. 8.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 2)항은 95,000,000원을 지급하면 보증채무 전체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 합의 3)항은 원고가 주채무자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합의 2)항, 3)항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합의 2)항은 보증채무 중 95,000,000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3)항은 나머지 55,000,000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게 명백하고, 이와 달리 피고 B의 주장처럼 불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들의 신탁계약

피고 B은 피고 C(피고 B의 배우자)과 사이에 2022. 11. 1.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C, 수익자 피고 B, 신탁종료시 잔여재산귀속권리자 F(피고 B의 아들)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64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들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다(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향후 상속재산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들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보증채권은 이 사건 신탁계약일인 2022. 11. 1. 이미 발생되었으므로, 위 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신탁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 B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 사이의 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 189.8㎡

2.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용단독주택

1층 84.36㎡

2층 84.36㎡

3층 85.38㎡

지하1층 117.61㎡

(내역 : 지하1층-주차장 108.63㎡, 보일러실 8.98㎡,

1층, 2층-다가구용단독주택1가구, 3층-다가구용단독주택)

-끝-

